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1
----------	------

발의연월일 : 2013. 11. 4

발 의 자 : 윤재상, 이한구 의원
(찬성자 7인)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도시가스는 안전한 친환경 연료로써 유류 등에 비하여 가격까지 저렴한 편리한 연료로 자리 잡았지만, 농어촌인 강화군·옹진군 대부분의 지역과 계양구 일부 지역 등지에서는 수요자인 시민들이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으며, 예산확보 등 획기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선임일로부터 3개월
 - ※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방안 강구
 - 도시가스 이외의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모색
 - 도시가스 확대 공급지원 제도 개선
 - 위 사안에 대해 제약이 되는 법률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 국회 건의 등

4. 대상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

5.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6.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